

특 정 감 사

감사결과 처분요구서

- 경주시 공사현장 특정감사 -

2019. 11.

1. 처분요구사항 일람표

(단위 : 천원, 명)

일련 번호	소 관	건 명	처 분 요 구		
			처분종류	재 정 상 조치금액	신 분 상 조치인원
1	○○과	ΣΣΣ 개설공사 미끄럼방지포장 설치계획 등 부적정	시정	감액 583,884천원	훈계2
2	○○과 ○○과	동일구조물 교량공사 설계 부적정	주의	-	-
3	○○○○과	공사 중지에 따른 계약금액조정(간접비) 부적 정	주의	-	훈계2
4	○○○○과	건설공사 품질관리업무 및 자재단가 적용 부 적정	주의	-	-

2. 신분상 조치인원 명세

연번	제 목	관 련 자			문 책	비 고
		소 속	직위(직급)	성 명		
1	ΣΣΣ 개설공사 미끄럼방지포장 설치 계획 등 부적정	○○과			훈 계	
		○○과			훈 계	현)○○○○과
2	동일구조물 교량공사 설계 부적정	○○과 ○○과			-	
3	공사 중지에 따른 계약금액조정(간접비) 부적정	○○○○과			훈 계	
		○○○○과			훈 계	
4	건설공사 품질관리업무 및 자재단가 적용 부적정	○○○○과			-	

3. 처분요구일람표

1) $\Sigma\Sigma\Sigma$ 개설공사 미끄럼방지포장 설계계획 등 부 적정	(시정) 4
2) 동일구조물 교량공사 설계 부적정	(주의) 8
3) 공사 중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(간접비) 부적정	(주의) 10
4) 건설공사 품질관리업무 및 자재단가 적용 부적정	(주의) 13

일련번호	1	감사자			공개(○), 비공개()
신분상 조치인원		재정상 조치방법	감액	재정상 조치금액	583,884천원
수감부서(처리부서)	○○과	처분요구일자		회신기일	

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

제 목 ΣΣΣ 개설공사 미끄럼방지포장 설치계획 등 부적정
소 관 청 경주시
관 계 부 서 ○○과
내 용

경주시 ○○과에서는 “ΣΣΣ(b b b ~ ♪ ♪ ♪) 개설공사”를 다음 [표]와 같이 준공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다.

[표] 사업현황 “생략”

1. 미끄럼방지포장 설치계획 부적정

「도로의 구조·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」에 따르면 도로의 구조 조건의 설계 기준치¹⁾는 설계속도가 시속 80km인 평지구간 간선도로인 경우 종단경사를 6%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다.

또한, 「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」(2016. 12. 구 국토해양부) 미끄럼방지포장 편 3.에 따르면 신설도로(덧씌우기 포함)로서 도로의 구조 조건이 설계 기준치 이상이고 노면상태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별도의 미끄럼방지포장은 설치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.

1) 설계속도에 따른 도로의 평면선형 및 종단선형을 만족하는 기준이 되는 조건을 설계기준치이라고 함.

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STA.0+670부터 STA.0+980까지 310m 구간은 신설 도로(설계속도 80km)로서 노면상태에 특별한 하자가 없고 최대종단경사가 3%로 도로설계 기준인 6% 이내를 충족함으로 미끄럼방지포장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데도 2019. 11. 1. 감사일 현재까지 미끄럼방지포장 2,845㎡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.

그 결과 불필요한 미끄럼방지포장 반영에 따른 공사비 311,077천 원(제경비 포함) 상당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.

2. 도급금액 산정 부적정
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,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, 「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」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,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.

따라서 당초 설계에 공사용량 및 공사자재 등이 과다 산정되었거나 설계상 착오로 과다 계상되었다면 설계를 변경하여 감액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.

1) 시공측량비 등 제경비 반영 관련

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「공공건설 사업비절감 매뉴얼」(2008. 구 국토해양부)에 따르면 준공도서작성비, 도로대장 작성, 시공상세도작성비, 시공측량비는 제경비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반영하여 제경비 43,096천 원을 과다 산정하였고,

2) 자재운반비 관련

「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」(2009. 3. 13. 구 행정안전부) 4-2-5에 따라 원재료 또는 완제품의 운송비, 하역비, 상하차비 등은 경비로 반영함이 적정한대도 혼합골재(303m³) 운반비 및 순환골재(14,827m³) 운반비를 노무비, 재료비, 경비로 구분 적용하여 그에 따른 제경비 32,955천 원을 과다 산정하였다.

3) L형측구 몰탈²⁾ 관련

또한, L형측구 설치(L=4,336m)에 필요한 몰탈을 실시설계에 반영하면서 2.168m³를 반영하는 것이 적정함에도 수량오기로 2,168m³를 반영하여 공사비 244,562천 원(제경비 포함)을 과다 산정하였고,

4) 현장사무실 정산 관련

공사현장 내 가설사무실을 660m²를 설치하는 것으로 실시설계에 반영하였으나 가설건축물대장 확인 결과 실제로는 398m²를 설치하였으므로 실제 설치비용으로 정산하여 28,245천 원(제경비 포함)을 감액하여야함에도 2019. 11. 1. 감사일 현재까지 감액 조치하지 않고 있다.

그 결과 시공측량비 및 자재운반비 등의 제경비를 과다 반영하여 제경비 76,051천 원 상당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, L형측구 몰탈 수량오기 및 현장사무실 미정산에 따른 공사비 272,807천 원(제경비 포함) 상당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.

조치할 사항 경주시장은

① 도로설계기준을 충족하는 신설도로 구간에 불필요하게 반영되어 있는 2,845m²의 미끄럼방지포장을 삭제하는 것으로 설계 변경하여 공사비 311,077천 원(제경비 포함) 상당을 감액하시기 바라며,

2) 시멘트와 모래를 일정한 비율로 섞어 반죽해 놓은 것을 말함.

② L형측구 몰탈 수량오기 및 현장사무실 미정산에 따라 과다 반영된 공사비 272,807천 원(제경비 포함) 상당을 설계 변경하여 감액하시기 바랍니다.

③ 더불어 관련자는 「경상북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**훈계처분** 하시기 바랍니다.

일련번호	2	감사자		공개(○), 비공개()
신분상 조치인원		재정상 조치방법		재정상 조치금액
수감부서(처리부서)	○○과 ○○과	처분요구일자		회신기일

경 상 북 도

주 의 요 구

제 목 동일 구조물 교량공사 설계 부적정
소 관 청 경주시
관 계 부 서 ○○과, ○○과
내 용

경주시 ○○과 및 ○○과에서는 “≫≫≫교” 등 6개 교량이 포함된 도로 및 하천공사를 다음 [표1]과 같이 추진 중에 있다.

[표1] 사업현황 “생략”
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동일 구조물공사³⁾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 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.

따라서 “ㄴㄴ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” 등 교량공사는 기초, 교각, 거더, 상판 등으로 구성되어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동일 구조물공사이고 부분별로 분할 발주할 경우 하자책임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거더를 교량공사에 포함시켜 통합 발주하여야 했다.

3)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 제1장 제1절 4.에 따르면 ‘동일 구조물공사’란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하는 것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함.

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‘≫≫≫교’ 거더부분을 상판 등의 공사와 분할하여 공사가 아닌 물품(관급자재) 제작·설치로 설계한 후 공사를 발주하는 등 [표2]와 같이 6건의 교량 거더가 공사와 분할하여 물품으로 설계에 반영되었다.

[표2] 특허공법 부분을 관급자재로 별도 발주하도록 설계된 사업 명세 “생략”

그 결과 하나의 구조물인 교량이 향후 하자발생 시 책임소재 불분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, 장기 공사인 “ㄱㄱ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”의 ‘≫≫≫교’ 경우 최소 11개월⁴⁾ 가량의 교량 하자보증기간이 단축된다.

조치할 사항 경주시장은

① 앞으로 동일 구조물인 교량공사를 분할하여 설계하지 않도록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.

4) ㄱㄱ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(2차)는 2020.1.9. 준공예정으로 2019.2.22. 교량거더 검수 완료한 후 11개월이 경과하여야 해당 차수공사가 준공되므로 해당기간만큼 교량거더의 하자보증기간이 단축됨.

일련번호	3	감사자		공개(○), 비공개()
신분상 조치인원		재정상 조치방법		재정상 조치금액
수감부서(처리부서)	○○○○과	처분요구일자		회신기일

경 상 북 도

주 의 요 구

제 목 공사 중지 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(간접비) 부적정

소 관 청 경주시

관 계 부 서 ○○○○과

내 용

경주시 ○○○○과에서는 “◎◎기념관 및 ◆◆수련관 건립공사”를 아래 [표] 와 같이 2017. 12. 27. ‘주식회사 ※※건설 대표이사 ♠♠♠’ 외 1과 계약 하고 2020. 10. 24.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.

[표] 공사현황 “생략”
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르면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의 발생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른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고 공사기간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.

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 제1장 제7절 “2-나”에 따르면 공사 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·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며,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규모·내용·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간접노무비의

노무량을 정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, 제13장 제8절 “2-라”에 따르면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.

그리고, 「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」 제12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시공자로부터 실정보고, 설계변경 방침결정 등의 보고 및 승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단순한 경우 7일 이내, 그 외의 사항은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
위 관서에서는 2018. 1. 3. 계약상대자의 공사착수 이후 2018. 1. 3. ~ 2018. 2. 26. ‘건설현장 동절기 시공 중지’와 2018. 3. 29. ~ 2018. 10. 30. ‘건축설계변경 및 건축협의를’ 사유로 2차례 공사 정지를 통지하였다.

그리고 계약상대자는 2019. 1. 28. ‘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건’ 실정보고를 제출하였고 위 관서에서는 2019. 1. 30. 접수하였다. 위 실정보고 내용은 공사 정지 기간 295일 동안 현장에 배치한 현장대리인 1인과 품질관리자 1인의 인건비 및 기타경비 132,000천원의 간접비 청구에 관한 것이다.

그러나,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실정보고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 정지가 해제된 후 제출되었고, 사전에 협의가 없었으므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는 불가함을 통지하여야 했다.

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및 실정보고 관련 규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았고 실정보고에 대한 승인도 없이 기타경비 중 증빙서가 없는 7,100천원을 제외한 124,900천원을 부당하게 계상하여 2019. 10. 8. 계약상대자와 계약금액 조정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.

이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실정보고 서류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아 계약상대자에게 124,900천원을 부당하게 지급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다.

조치할 사항 경주시장은

- ① 건설공사 계약관련 법령에 대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,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- ② 관련자는 「경상북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.

일련번호	4	감사자		공개(○), 비공개()
신분상 조치인원		재정상 조치방법		재정상 조치금액
수감부서(처리부서)	○○○○과	처분요구일자		회신기일

경 상 북 도

주 의 요 구

제 목 건설공사 품질관리업무 및 자재단가 적용 부적정
소 관 청 경주시
관 계 부 서 ○○○○과
내 용

경주시 ○○○○과에서는 아래 [표1]과 같이 ‘㉔㉔㉔㉔공원 조성사업’을 추진중에 있다.

[표1] 공사현황 “생략”

1. 건설공사 품질관리업무 부적정

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55조, 제5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, 제90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, 제53조에 따르면 총공사비 5억원 이상 토목공사, 연면적 660㎡ 이상 건축공사, 총공사비 2억원 이상 전문공사에 대하여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·확인을 득한 후 착공 전 발주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

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하며, 이때 건설업자는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를 고용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.

<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, 시행규칙 별표5>

공사분류	공사규모	시험장비	시험실 면적	품질기술자 배치기준
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	1000억원 이상, 연면적 5만㎡ 이상	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검사장비	50㎡ 이상	특급1명, 중급2명 이상
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	500~1000억원, 연면적 3만~5만㎡ 이상		“	고급1명, 중급2명 이상
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	100~500억원, 연면적 5천~3만㎡ 이상		20㎡ 이상	중급1명, 초급1명 이상
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	2~100억원		“	초급1명 이상

그런데도, 경주시 ○○○○과서는 아래 [표2]와 같이 총사업비 5억원 이상으로 사업이 품질시험계획수립 대상임에도 공사감독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 지시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, 품질시험계획 서류만 제출받았을 뿐 공사감독자의 검토·확인 및 승인한 사실이 없다.

[표2] 품질시험계획수립 부적정 등 현황 “생략”

건설공사 품질관리는 장·단기적으로 건설공사의 안전확보, 목적물의 성능보장과 내구성 확보 및 사용자의 안전 확보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, 이에 따라 관련법으로 건설공사 품질관리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, 경주시 ○○○○과에서는 품질관리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.

2. 자재단가(초화류) 적용 부적정
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7조에 따르면 원가계산을 할 때 자재의 단가는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가격, 감정가격, 유사한 거래실례가격, 견적가격 순서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

그런데도, 경주시 ○○○○과서는 공사에 사용되는 초화류는 통계작성기관에서 공표한 가격(관급구매 가능)이 있음에도 견적가격을 적용하여 사업비 50,900천원을 과다 계상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.

조치할 사항 경주시장은

① 건설공사 계약관련 법령에 대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,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